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5. 10. 20(화)
제 262 회 임시회

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

【전문위원 전태언】

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사회복지과)
- 제출일 : 2015년 10월 07일
- 검토일 : 2015년 10월 08일

2. 제안이유

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 되었으므로 기존의「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를「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실무분과)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·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기구 및 구성에 대한 사항(안 제 3~4조)
-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등의 관한 사항(안 제5~6조)
- 위원장 등의 직무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관한 사항(안 제7~9조)
- 읍·면·동 지역의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읍·면·동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회의, 회의록, 의결사항 처리, 의견 청취, 공청회 개최,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 12~18조)

4. 검토의견

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
-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대표협의체)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나. 정책 및 내용검토

- 조례안에서는 법령에 따라 양주시에 각각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실무협의체 내에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실무분과를 두며 각 읍면동에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협의체별 기능과 역할 등을 정하고 있음.

명 칭	설치대상	인 원(명)	비 고
대표협의체	시 본청	10명 ~ 40명	
실무협의체	시 본청	10명 ~ 40명	
실무분과	시 본청	20명 이하	
읍면동협의체	읍·면·동	10명 이상	11개 읍면동

- 각각의 협의체는 법에서 두도록 정한 것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함.

- 안 제8조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¹⁾과 제6조 제3항²⁾에 연임

1) 제5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법에서 연임을 금지 조항도 없어 걱정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형식검토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·심사 기준에 의한 걱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라. 절차검토

-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

라. 의정협의회 결과

- 제18차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고,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음.

2) 제6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